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74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백혜련·김준혁·이병진

이기헌 • 박홍배 • 허 영

이수진 • 부승찬 • 서영석

이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설물·인쇄물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성명·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행위는 금지하고 있음. 이는 투표참여 권유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내용이유추됨을 이유로 일반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까지 금지의 대상으로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4호).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4호 중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를 "명시하여"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		
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4		
확성장치 • 녹음기 • 녹화기(비			
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			
명을 <u>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u>	<u>명시하여</u>		
<u>나타내어</u> 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			